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58호
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「도로교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)」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. .

국토교통부장관

1. 기준명 : 도로교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)

2. 구 분 : 부분개정

3. 개정목적

- 2012년 1월 제정된 도로교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)의 오류사항을 개선하고 기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함.
- 장경간 케이블 교량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를 위하여 초장대 교량사업단의 성과를 반영한 한계상태설계법 기반 기준 추가

4. 주요 개정내용

구분		주요(개정)내용
제1장	총칙	-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영문표기를 병기 -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 일부를 수정 - 오타자 수정

구분		주요(개정)내용
제2장	설계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리밑공간 규정에 하천상 교량을 추가 -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 일부를 수정
제3장	하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, 문장, 오탈자를 수정 - 케이블교량편(잠정 안)과의 일관성 유지와 도로의 폭 규정에 따른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재하차로(설계차로)의 수를 정하는 방법을 수정 - 케이블교량편(잠정 안)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표준차로하중의 크기와 피로트럭모형을 수정 - 콘크리트부재의 설계에 사용되는 지속하중조합 추가
제4장	구조해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.5.1 절에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반여건과 경계조건을 고려하도록 관련내용 추가 (AASHTO 2012 참조) - 4.6.1.2 절에서 현장타설 박스거더 곡선교의 구조해석에 관한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함 (2012 AASHTO 개정내용 참조) - 4.6.3 절에서 도로교설계기준 3.6.1.2과 AASHTO LRFD 3.6.1.1.2의 활하중 동시재하계수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수정계수 부분 수정(삭제 또는 추가) - 당초 4.6.7.2 강거더교는 도로교설계기준(2010)의 강교의 유효폭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, AASHTO LRFD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설계사례를 조사한 결과 4.6.7.1으로 당초 4.6.7.2 강거더교를 대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함
제5장	콘크리트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.6.6.1 "모멘트확대계수 1.4" 규정을 콘크리트구조기준(2012)에 따라 추가함 - 5.8.3.3 (8) 스트럿-타이 모델... 은 혼란을 피하고자 삭제함 - 5.10.1 환경노출에 따른 최소 콘크리트강도 규정을 수정함
제6장	강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.6.2 인성요구조건의 표 6.6.6에서 온도구역 I과 II에서 경상북도 지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최저 공용온도에 대한 주석 내용 추가 - 상기 이외에는 단순 오타 수정
제7장	하부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에서 기 제시된 시험법을 해당 국내 규격(KS)으로 수정하여 제시 - 타입말뚝에서 국내 적용성이 낮은 콘 관입시험(CPT)을 활용한 지지력 평가법 삭제 - 전체내용에서 동일한 용어가 다르게 표기된 부분을 통일하여 표기하였고,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표기 - 전체내용에서 인용문헌의 영어표기를 한국어로 수정하여 표기
제8장	내진설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절번호를 다른 장들과 형식 통일을 위해 수정 - 8.6.9 지반의 액상화 평가- 액상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현재 지반 분야에서 통용되는 내용으로 수정 - 8.10.2.4 교각의 설계휨강도-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

구분		주요(개정)내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.10.2.5 교각의 최대 소성힌지력-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 내용 반영 - 8.10.3.5 심부구속 횡방향철근상세- 설계 및 시공 실무의 현실적인 부분과 사례를 반영하여 수정 - 8.10.4 벽식 교각-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- 8.10.5 중공원형 교각- 중공 원형 교각에 대한 소성설계 규정 추가 - 8.10.6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-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
제9장	신축이음, 받침 및 방호울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.6.4 지진격리받침의 성능확인을 위한 검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시험에서는 전수시험 혹은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- 9.6.5 기존의 9.6.4절을 전수시험 혹은 전수검사의 취지에 맞게 문구 수정하고 절번호를 수정하여 9.6.5로 규정 - 9.4.3.1, 9.4.3.2, 9.4.5.3, 9.4.6.3에서 기존에 공통편을 참조하도록 한 것을 설계기준의 체계에 맞도록 제3장 하중편을 참조하도록 문구 수정 - 9.6.3.4 지진격리받침의 좌굴검토시 사용하는 계수가 상시에 1.5, 지진시에 2.5로 잘못 표기된 것을 상시에 2.5, 지진시에 1.5로 바로잡음
별권 [추가]	케이블교량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경간 케이블 교량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를 위하여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성과를 반영한 한계상태설계법 기반 기준(잠정 안) 제시

5. 관련단체 : (사)한국도로교통협회(☎ 02-3490-1000)

6. 도로교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)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이 설계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해 적용한다.

※ 도로교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)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(☎ 02-3490-1000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www.kcsc.re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